#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77

발의연월일: 2021. 6. 8.

발 의 자:정경희·정찬민·조경태

金炳旭・곽상도・신원식

송석준ㆍ이 영ㆍ김영식

서일준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 등)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(GDP)의 4.05%로 OECD 회원국 평균 1.96%의 2배가 넘고 영국,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. 또한,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별도로 비교해도 201 8년에는 0.82%로 OECD 회원국 평균 1.07%를 밑돌았으나, 2019년 0.9 2%, 2020년 1.20%로 매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.

앞으로도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 상승 및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실제로 2021년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%상승했고 세종시의 경우 70% 급등하기도 했음. 이는 투기세력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음.

이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「부동산 가격공

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"공시기준일"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에서 "취득일"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것임(안 제110조).

##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10조(과세표준) ① 토지 및 건축물(주택은 제외한다)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  -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일 당시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  - ③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

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제110조(과세표준) ① 토지·건축
물·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
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
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
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
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
으로 한다.

- 1. 토지 및 건축물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90까지
- 2. 주택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40부터 100분의 80까지
-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 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
개 정 안

제110조(과세표준) ① 토지 및 건축물(주택은 제외한다)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
-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일 당시의 제4조제 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 다.
- ③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 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